

고 시 문

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-419호

「주택법」 제57조제4항 후단 및 「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」 제14조제3항·제4항에 따른 「시·군·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(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-111호, 2022.3.1.)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·고시합니다.

2022년 7월 15일

국토교통부장관

시·군·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

시·군·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“별표 1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22년 7월 15일 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·군·구별 기본형건축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.

【별표 1】

주요 자재별 기준단가

연번	품목	규격	기본형건축비 대비 비중(%)	단위	단가(원)
지상층 기본형건축비	고강도철근(공장도)	H-16(SD500)	3.10%	ton	<u>1,191,000</u>
	레미콘	25-240-15	4.50%	m ³	<u>67,745</u>
	알루미늄거푸집	동바리 및 부자재포함	1.32%	m ²	<u>4,200</u>
	강화합판마루재	내수합판+무늬자코면강화	1.51%	m ²	<u>22,000</u>
	투명유리	16mm	1.53%	m ²	<u>23,634</u>
	비닐실크벽지	300kg/m ² 이상	0.31%	m ²	<u>2,257</u>
	온도조절 온수배분기	5/4구(홈네트워크, 조인트박스제외)	0.32%	set	<u>436,698</u>
	스치로폴	비드법 2종2호, 80mm	0.30%	m ²	<u>10,123</u>
	콘크리트벽돌	KS 82kg/cm ² (190*90*57)	0.30%	매	<u>53</u>
	화강석	포천석, 물갈기 30mm	0.36%	m ²	<u>33,000</u>
	폴리부틸렌(PB)관	D16mm, 난방용	0.27%	m	<u>672</u>
	시멘트(운반구상차도)	40kg	0.24%	포	<u>4,100</u>
	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	난연, CD 16mm	0.06%	m	<u>154</u>
	도기질타일	300×600	0.34%	m ²	<u>15,000</u>
	모래	수도권(상차도)	0.01%	m ³	<u>16,000</u>
	전력케이블(IEC)	난연 F-CV 50mm, 2×1C	0.16%	m	<u>5,994</u>
스파이럴덕트(AD용)	D200x0.5T (아연도금량 150g/m ²)	0.18%	m	<u>22,729</u>	
지하층	지하-레미콘	25-240-15	14.02%	m ³	<u>67,745</u>
	지하-고강도철근	H-22(SD600)	9.11%	ton	<u>1,191,000</u>

* 단가는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것임

* 각 품목의 규격은 기본형건축비에 포함된 비중이 가장 큰 규격을 명시한 것이며, 비중은 해당 품목(대표규격 포함) 전체의 비율을 의미함